

논문집 규정 및 부속규정 제·개정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학회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규정

제정	2000년	2월	12일
개정	2001년	4월	15일
개정	2003년	2월	3일
개정	2004년	2월	2일
개정	2004년	3월	10일
개정	2005년	4월	1일
개정	2005년	12월	2일
개정	2007년	11월	20일
개정	2012년	4월	12일
개정	2017년	1월	13일
개정	2021년	4월	30일
개정	2023년	7월	18일
개정	2024년	1월	4일

1. 목 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투고 및 심사 등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집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학회는 논문집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심사의 위촉 및 논문편집과 관련된 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논문집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지역 및 전공분야에 따라 선임된 15인 이상의 인원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 구성 및 인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논문집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 투고자의 자격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저자(들) 중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포함한 50% 이상은 본 학회회원인면서 회비납부하여야 한다.

4. 원고의 접수

- 원고는 논문집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마감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고, 심사일은 매 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한다.
- 원고는 제출자가 '논문집 부속규정1 (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맞게 편집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거나, 원본 1부와 심사용 원고(복사본) 3부, 논문 제출서 1부 그리고 논문과 논문 제출서가 담긴 디스켓을 학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서는 인터넷 접수 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는 원고 제출 시 논문제출서의 양식에 의거하여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 주저자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교신저자는 생략할 수 있다.

5. 원고의 수리 및 게재

- 원고의 수리 여부는 논문집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리된 논문은 '논문집 부속규정3 (논문심사 규정)'에 의해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다음과 같은 원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논문
 - 이미 발표된 논문으로서 게재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단 이미 발표된 논문 (학술발표대회 논문 등)이라도 새로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수리될 수 있다.
 - 원고 작성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

- 기타 논문집편집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본 학회 논문집의 논문으로 적당치 않다고 판정된 논문
- 원고의 수리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단 논문집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일을 기준으로 심사, 수정, 교정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각 논문의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동일 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의 논문은 동일 논문집에 2편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다.

6. 연재회수의 제한

부제가 각기 다른 동일 제목의 논문은 점수를 불가한다.

7. 원고의 반환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8. 원고 작성

원고 작성의 형식에 관하여는 '논문집 부속규정1(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따른다.

9. 수정 및 교정

- 투고자는 '논문집 부속규정1 (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부합하는 원고를 제출하며 또한, 논문심사결과와 논문집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원고를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논문집편집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수정 또는 교정 일자에 투고자가 원고를 제출치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예정 논문집의 게재대상 논문에서 누락시킬 수 있다.

10. 투고료

- 투고자는 논문1편당 투고료 150,000원을 원고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쪽수는 8쪽이 기본이고 12쪽이 최대이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50,000원의 초과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출된 논문의 투고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11. 지상토론

지상토론에 관련된 사항은 '논문집 부속규정1 (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따른다.

12. 발행일

본 학회 논문집은 1월31일, 3월31일, 5월31일, 7월31일, 9월30일, 11월30일로 1년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13. 저작권

- 저작권은 논문제출서에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논문집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동의함으로써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14. 부속규정

-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 정하는 부속규정에 따른다.
- 부속규정 개정은 논문집편집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이 시점에서 심사 중인 모든 논문에도 적용한다.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부속규정 1 논문원고 작성 규정

제정 2000년 2월 12일
개정 2001년 4월 15일
개정 2005년 12월 2일
개정 2013년 6월 11일
개정 2016년 6월 2일
개정 2019년 12월 12일
개정 2025년 1월 2일

1. 일반사항

1.1 원고의 내용

논리적 또는 실험적 연구 성과를 얻은 독창적 내용의 학술연구논문으로 한다.

1.2 원고의 구성

(1)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표준으로 한다.

- ① 제목 (국문)
- ② 성명 (국문)
- ③ 소속 및 직위 (국문)
- ④ 제목 (영문)
- ⑤ 성명 (영문)
- ⑥ 소속 및 직위 (영문)
- ⑦ Abstract (영문)
- ⑧ Keywords (영문)
- ⑨ 본문(서론, 본론, 결론): 단 본론의 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장으로 구분한다. 그림과 표의 설명(캡션) 및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한다.
- ⑩ ORCID (영문)
- ⑪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
- ⑫ References (영문)
- ⑬ 기호, 부록 (필요한 경우)
- ⑭ 요약 (국문)
- ⑮ 키워드 (국문)

1.3 서론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을 비롯해 연구목적과 범위, 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다른 논문의 도움 없이도 논문의 연구배경 등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1.4 본론

기본 가정, 기본 이론, 새로운 이론과 방법의 전개, 실험연구인 경우 실험의 방법과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다른 문헌과 비교하여 본 논문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5 결론

연구에서 얻어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가치와 기여도 및 활용방안 등을 기술한다.

1.6 감사의 글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학술적 조언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기관명, 인명 등을 기재하여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으나 지나친 표현은 삼간다.

1.7 원고작성

- (1) 원고는 전산기로 작성, 300dpi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부속규정 2에 따른다.
- (2) 원고는 키워드까지 1단으로, 본문부터는 2단으로 편집한다.

1.8 원고분량

논문 원고분량은 8쪽을 기본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 12쪽까지 가능하다.

1.9 본문의 장, 절, 항

(1) 본문의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 : 1.

절 : 1.1

항 : 1.1.1

장, 절, 소절 및 항의 제목이 영문일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표기방법과 동일하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이 국영문 혼용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번역하여 국문으로 표기하며, 영문 표기를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문 중에 삽입하여 표기한다.

1. 건설 변이

1.1 개요

1.2 변이계입

1.3 변이 관리

1.3.1 변이 원인

1) 일반원인

(1)

①

(2) 장 타이틀을 위, 아래 각각 1행씩을 비우고, 절 타이틀은 위만 1행을 띄고, 항 타이틀은 행을 비우지 않는다.

2. 사용어 및 표기

2.1 사용어

(1) 사용어는 국어, 또는 영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 사용문자

- (1) 국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 (2)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1989) 및 [표준어규정](1989)에 따른다.

2.3 외래어 표기

- (1)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함으로써 난해한 외래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
- (2) 외래어의 표기는 문교부 [외래어표기법](1986) 및 [외래어표기용례집](1986)에 따른다.
- (3) 다음 사항은 원어 그대로 쓴다.
 - ① 문헌명
 - ② 약어
- (4) 본문 중의 로마자를 사용하는 외래어의 표기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고유명사의 첫 자
 - ② 대문자를 쓰는 약어

2.4 숫자 및 수식

(1) 숫자

- ①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② 1 이상의 소수는 소숫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 ③ 분수는 가급적이면 $\frac{3}{4}$ 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3/4으로 쓴다.
- ④ 네 자리 이상의 수는 세 자리마다 자리표시(콤마)를 하든가 간격을 둔다. 다만 네 자리의 수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좋다.

(2) 수식

- ① 수식은 줄(행)을 바꾸어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식이 2행 이상에 걸쳐 있을 때에는 “=” 기호부터 줄을 바꾸고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 “-” “×” 또는 “÷”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 ③ 수식의 첨자는 논문집으로 나왔을 때 보일 정도의 크기로 한다.
- ④ 수식은 수식 오른쪽에 (1),(2),(3)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 ⑤ 수식의 번호는 논문 전반에 걸쳐 일련번호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는 수식의 우측 끝에 표기한다. 단, 동일한 성격의 수식으로서 일련번호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때 동일한 번호에 대하여 영문 알파벳으로 수식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단위 및 기호

3.1 단위

- (1)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척관법(尺貫法)이나 ft-lb법 등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전항 이외의 필요한 관용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페인트 1통(20l)
시멘트 1포대(40kg)

3.2 기호

- (1) 단위기호 및 양(量)기호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 양기호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호는 최초로 기술된 장소에 기호의 정의를 문장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 (3) 동일 기호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그림 및 사진, 표

그림과 사진, 표는 각각 논문의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림과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하단의 중앙에 기입하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상단 왼쪽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때, 설명(캡션) 및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첫 글자만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그림 및 표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각각의 그림 및 표에 대하여 (a), (b)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Fig. 3(a), Fig. 3(b)와 같이 표기하여 설명한다.

4.1 그림 및 사진(Fig.)

(1) 그림 및 사진 제작

- ① 그림과 사진(가급적 인화지 원본 사용)은 복사되지 않은 선명하고 깨끗한 원본을 사용해야 하며 인쇄했을 때의 크기를 감안하여 작성하고 크기가 클 경우에는 축소됨을 고려하여 축소하더라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 선명도가 떨어져 논문집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그림은 흰색의 캔트지나 트레이싱 페이퍼에 검정잉크로 제도하거나,

전산출력물을 사용하며, 그림에 기입할 문자는 역시 전산출력문자를 사용한다. 사진은 원화 중 선명한 것을 사용한다.

- ③ 그림 및 사진의 가로 크기는 한단에 편집시 7cm, 양단에 편집시 15cm를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그림 및 사진 첨부방법
그림 및 사진은 원본에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그림 및 사진 번호와 설명
 - ① 그림 및 사진이 들어갈 자리에는 그 크기의 공간을 두어야 하며, 일련번호와 설명(캡션)은 그림아래 가운데에 기재한다.
 - ② 일련번호 및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예) Fig. 3. System architecture
 - ③ 여러 그림 및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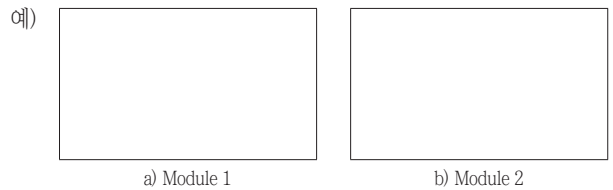


Fig. 3. System architecture

4.2 표(Table)

- (1)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한다.
- (2) 모든 표의 일련번호와 설명(캡션)은 표 위 왼쪽정렬로 기재한다.
- (3) 표 일련번호 및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예) Table 5. Critical success factors
- (4) 표 중의 주기는 그 표의 바로 밑에 기재한다.
- (5) 표의 모양은 윗선은 진하게 나머지 선은 보통선, 왼쪽과 오른쪽 선은 없앤다.
예)

Table 5. Critical success factors

5. 주기방법

5.1 주기일반

- (1) 본문의 내용을 보완 설명하는 주기는 각주로 하고, 참고문헌의 표기는 미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가 필요한 부분에는 각주 일련번호를 반 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고 해당 쪽의 하부에 그 각주번호 및 설명을 넣는다.

5.2 인용문헌의 주기

본문 중 인용된 내용은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출처는 (저자명, 연도)의 형태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된 출처 문헌이 단일저자인 경우 (저자명, 연도), 2인 저자인 경우 (저자명1 and 저자명2, 연도), 그리고 3인 이상 저자인 경우 (저자명1 et al., 연도)로 표기한다.

예1) “○○은 ○○○○라 정의한다.” (Hong, 2005)

예2) Hong & Yang (2005)은 ○○은 ○○○○라고 정의하였다.

예3) (Choi et al., 2001; Kim, 2005; Yang & Lee, 2010)

6. 기호

논문에서 사용한 기호를 알파벳 순으로 적어서 그 정의를 명백히 한다. 단 가끔

적 그리스 기호, 영어 기호 순으로 한다.

7. ORCID(국제저자식별정보) 표기

모든 논문저자는(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번호(ORCID)를 발급받아 논문에 기입 한다.

예) Gunseol Lee, <https://orcid.org/0000-0000-0000-0000>

8. 참고문헌(References)

8.1 참고문헌(References)의 기재방법

- (1)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일괄 기재한다.
- (2) 참고문헌은 가능한 한 모두 영문으로 번역하여 작성하며,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 (2) 본문에 인용된 모든 문헌은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방법을 아래와 같이 각각 정한다.
 - ① 학술지(정기간행물)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정기간행물명, 발행기관명, 권수(호수), 인용한 쪽. DOI넘버
예) Hong, G.D., and Kim, M.S. (2005). "A project scheduling method."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4(3), 71-75. <https://dx.doi.org/10.6106/KJCEM.2025.26.1.003>
 - ② 단행본 게재논문 또는 저술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단행본명, 편집자(있는 경우), 발행기관명(또는 출판사), 출판지역(국외인 경우), 인용한 쪽.
예) Lewellen, W.S. (1977). "Use of invariant modelling." *Handbook of Turbulence*, W. Frost, ed., Vol. 1, Plenum Press, New York, N.Y., 237-280. https://dx.doi.org/****
 - ③ 학위 논문인 경우: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종류, 학위수여기관, 소재지(국외인 경우)
예) Beltaos, S. (1974). "Turbulent impinging je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Canada.
 - ④ 웹페이지 또는 온라인 문헌인 경우: 저자명 (작성년도), "문헌제목." 사이트기관명, 소재지(국외인 경우), <웹 주소> (해당문헌에 접속 또는 다운로드한 날짜)
예) Hong, G.D. (2005). "Market of CM for fe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http://www.kicem.or.kr>> (Dec. 15, 2012)
 - ⑤ 고시 및 지침인 경우: 작성기관명 (공시년. 월. 일). 문서명 (부제목)
예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fication No. 414 (2017, Jun 20), Criteria for the Cost of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예2)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2013). Article 1, Clause 1, No. 1. (1).
예3) Labor Standards Act (2014). Article 2, Clause 1, No. 1. (1).
- (4) 저자의 성 뒤에는, 를 표기하고 이름은 알파벳 첫 글자만 표기하고 마침표를 찍는다. 문헌에 Middle name도 표기된 경우 First name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첫 글자만 표기한다.
- (5) 저자(들)의 성명 및 출판년도가 동일한 문헌들에 대해서는 "Kim (1993a)"과 같이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덧붙여 구분한다.
- (6)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두 가지 예외의 경우를 둔다.
 - ① 보고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성명만을 사용하여 "Kang et al."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②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만 표기하여 "Paik et al."과 같이 표

기한다.

(7) 국내보고서의 경우, 저자는 보고서 발행기관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영문명칭을 표기한다.

(8) 기관의 공식 영문명칭은 발행년도 당시의 기관명칭으로 표기하며, 기관 영문명칭은 약어를 쓰지 않고 풀어쓰되 각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단, 해당기관이 본문에서 약칭으로 인용된 경우는 영문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약칭을 표기해야 한다(한글법령의 영문표기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웹사이트"의 공식영문을 기재한다).

8.2 부록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 혹은, 수식의 유도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설 등은 필요한 경우 부록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본문에 부록에 대하여 언급해 두어야 한다.

9. 지상토론

9.1 내용

지상토론(이하 토론이라 한다)은 대상논문 게재 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해야 한다. 토론은 대상논문 저자의 토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논문집에 수록한다. 단 게재료는 없다.

9.2 채택 및 관리

토론의 채택 및 관리는 논문집편집위원회가 한다.

9.3 토론원고작성

토론원고의 사용어 및 표기, 단위 및 기호, 그림 및 사진, 표, 주기방법, 참고문헌 기재방법 등은 부속규정 1에 따른다. 단 토론 및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인쇄시 각각 2쪽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토론의 제목은 '「(토론대상 논문 제목)」에 대한 토론'이라고 첫 행에 기입하고 행을 바꾸어 괄호 속에 '논문제목, 저자,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권 제○○호, ○○○○년 ○○월호 게재'라고 기입한다.

10. 기타

일정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은 "감사의 글"에 기재한다.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부속규정 2 편집세부규정

제정	2000년	2월	12일
개정	2001년	4월	15일
개정	2005년	4월	1일
개정	2005년	12월	2일
개정	2011년	3월	10일
개정	2013년	6월	11일
개정	2016년	6월	2일
개정	2019년	12월	12일

1. 원고작성

- (1) 원고는 교정 작업 및 편집 작업 등 인쇄공정의 생략 및 시간절약, 정확도 등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논문제출자가 직접 편집하여 작성한다.
- (2) 논문의 출판은 투고자가 완성한 원본을 제관한 뒤 옵션으로 인쇄하는 공정을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전산출력물을 이용, 완전한 체계를 갖추어 편집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손으로 쓴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3) 편집기는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 한글"을 사용함을 기본으로 한다.

크기(mm)	여 백				위 치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기준	가로	세로
178(가로) × 임의(세로)	안여백	25	25	0	0	문단	가운데	0
	바깥여백	0	0	0	10			자리차지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부속규정 3 논문심사규정

제정	2000년	2월	12일
개정	2001년	4월	15일
개정	2003년	2월	3일
개정	2004년	3월	10일
개정	2005년	7월	6일
개정	2005년	12월	2일
개정	2007년	11월	20일
개정	2008년	7월	18일
개정	2011년	3월	10일

1.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촉 및 방법

- (1)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논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본 부속규정 3조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심사 위촉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 (4) 각 심사위원은 위원회가 정한 기일(2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통고하여 적절한 심사자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의 사정에 의해 심사기일을 넘길 경우 본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없이 심사기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심사위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 (5)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 공개할 수 있다.
- (6)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자격

-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으로써 기선정된 심사위원이 비회원인 심사위원을 추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제출논문 제1저자(혹은 교신저자)와 지도교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출논문 제1저자(혹은 교신저자)와 동일한 직장(학교 혹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 ③ 그 밖에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논문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4) 심사위원은 스스로 판단하여 위 (3)에 관련되거나 공정한 논문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을 반려해야 한다.

4. 논문의 평가

-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논문의 심사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게재가 : 무수정 게재

② 수정게재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논문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고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정재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 수정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수정된 논문은 재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정재심'판정은 1차에 한하며 또다시 '수정재심' 이하의 판정이 나올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④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 또는 수준이 극히 부실하여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재심사는 없다.

5. 논문게재

- (1) 논문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2항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린다.
- (2) 게재 기준
 - ① 3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하되 3인의 최종판정 중 2인의 게재가 판정 때에도 게재한다. 단, 2인이 게재가, 1인이 게재불가 판정 시 게재불가 사유를 논문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그 사유가 중복게재 또는 표절 등 윤리적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게재불가 심사자에게 2인의 게재가 심사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게재됨을 통보한다.
 - ②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게재(채택)되지 않는다.
 - ③ 수정재심의 경우 원심사자는 재심 의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편집위원회가 원심사자를 대신해서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 (3) 논문투고자는 수정본 제출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논문에 대한 게재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이의제기

투고자가 심사판정에 이의를 가질 때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논문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 표절 및 중복게재

- (1) 논문의 표절 및 중복 게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또는 타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논문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를 검토한 후 표절 및 중복 게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내 해명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 (2) 문제 제기와 해명 및 이의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논문편집위원장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게재심사를 수행한다.
- (3)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한다.
 - ① 공동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를 최종판정일로부터 1년간 금지한다.
 - ② 해당 논문저자에 대한 징계를 학회 상벌위원회에 보고한다.
- (4)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 될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의거 아래 사항을 포

합한 조치를 취한다.

- ① 해당논문을 학술지 목록에서 삭제한다.
- ② 공동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를 최종판정일로 부터 3년간 금지한다.
- ③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판정내용과 함께 공지한다.
- ④ 해당 논문저자에 대한 징계를 학술지 평가 및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 ⑤ 해당 논문저자에 대한 징계를 학회 상벌위원회에 보고한다.

8.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규정

제정	2000년	2월	12일
개정	2001년	4월	15일
개정	2005년	12월	2일
개정	2007년	11월	20일

1. 목 적

본 규정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작성

- (1) 논문원고는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편집규정에 따른다.
- (2) 논문은 A4 용지 2쪽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3) 원고작성 형식과 편집규정은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규정과 부속규정 1, 2 그리고 3에 준한다.

4. 원고의 접수 및 수리

- (1) 원고접수는 논문발표일 30일 전에 마감한다.
- (2) 원고의 수리 여부는 별도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술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기 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밖의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6.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